경제혁신 3개년 계획 |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
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**2015년 9월 29일(화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월 28일(월) 오후 19시 이후 보도가능)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신정훈 과장(044-203-5770), 전동욱 서기관(044-203-5772), 조은정 사무관(044-203-5776)

# 세계무역기구(WTO),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설치 결정

□ 9. 28. (월) 열린 세계무역기구(이하 WTO) 분쟁해결기구(Dispute Settlement Body; DSB) 정례회의에서,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을 설치했다.

○ 우리나라는 8. 31. (월) 분쟁조정기구(DSB )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1차 요청을 반대한 바 있으며,

-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의 패널설치 재요청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했으나, WTO 규정*에 따라 패널이 자동 설치됐다.

* WTO 관련 규정상 패널 설치가 요청된 첫 번째 DSB 회의에서는 모든 회원국(피소국 포함)이 동의해야 패널이 설치되고, 제소국이 재요청시에는 차기 회의에서 자동 설치

□ 앞으로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패널 구성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.

○ 패널 구성을 완료한 이후에는 패널작업절차 및 일정을 확정한 뒤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,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진행하게 된다.

* 패널 설치 이후 패널보고서 채택까지는 WTO 규정상 약 1년이 소요되나, 실제 일정은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으로 규정보다 지연되는 추세

□ 정부는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 대응해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과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을 철저히 짚어보고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.

첨부: WTO 분쟁해결절차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신정훈 과장(☎ 044-203-577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첨부 WTO 분쟁해결 절차도

